

# 2022 세법학 I II 7판2쇄 정오표

2022년 08월 12일 현재까지 오류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쇄 교재의 경우에는 1쇄 정오표와 함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개정으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학원(나무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위치	수정전	수정후																																	
세법학 I																																				
2-268	상8	② ~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자	② ~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인 사업자. 다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분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2-321	상4	Ⅲ. 1. 2. 3. 변경	<p>Ⅲ.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b>개정</b></p> <p>1. 개요</p> <p><b>전월세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해</b>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b>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b>(소득령155의3①).</p> <p>2. 상생임대주택 요건</p> <p>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b>직전 임대차계약</b>(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b>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b>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b>체결</b>(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b>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b>. 이 경우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p> <p>② ①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b>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b></p> <p>3. 1세대 1주택 특례</p> <p>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b>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b>.</p>																																	
2-377	하2	② ~ 세율×10%	② ~ 세율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반영한 세율																																	
세법학 II																																				
1-130	하15	포함한다(부기통12-85-5). (추가)	포함한다(부기통12-85-5). 다만, 2022.7.1. ~ 2023.12.31.까지 공급하는 것은 <b>판매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b> <b>개정</b>																																	
1-264	상4	한도율 표 변경	<p>2) 한도율 표 변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rowspan="3">과세표준</th> <th colspan="4">한도율 <b>개정</b></th> </tr> <tr> <th colspan="2">음식점업</th> <th colspan="2">이외 업종</th> </tr> <tr> <th>2023년까지</th> <th>2024년부터</th> <th>2023년까지</th> <th>2024년부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개인 사업자</td> <td>1억원 이하</td> <td>75%</td> <td rowspan="2">50%</td> <td rowspan="2">65%</td> <td rowspan="2">50%</td> </tr> <tr> <td>2억원 이하</td> <td>70%</td> </tr> <tr> <td>2억원 초과</td> <td>60%</td> <td>40%</td> <td>55%</td> <td>40%</td> </tr> <tr> <td>법인</td> <td></td> <td>50%</td> <td>30%</td> <td>50%</td> <td>30%</td> </tr> </tbody> </table> <p>다만,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구 분	과세표준	한도율 <b>개정</b>				음식점업		이외 업종		2023년까지	2024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부터	개인 사업자	1억원 이하	75%	50%	65%	50%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	40%	55%	40%	법인		50%	30%	50%	30%
구 분	과세표준	한도율 <b>개정</b>																																		
		음식점업				이외 업종																														
		2023년까지	2024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부터																															
개인 사업자	1억원 이하	75%	50%	65%	50%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	40%	55%	40%																															
법인		50%	30%	50%	30%																															

1-265	하10	한도율 표 변경	한도율 표 변경				
			구 분	1억원 과세표준 합계액	한도율 <b>개정</b>		
				2023년까지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4억원 이하인 경우	65%	50%	
				4억원 초과인 경우	55%	40%	
			법인		50%	30%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28	하5	~ <u>그 세율의 30%의 범위</u> ~	~ <u>그 세율의 30%(4호 물품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b>개정</b>)</u> 의 범위~				
2-29	상5	③ ~.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kg당 220원 <b>개정</b>	③ ~. 다만, 2022.12.31.까지는 kg당 176.4원 <b>개정</b>				
	상15	㊸ 추가	㊸ ㉠ 외 발전용 물품 : 10.2원 <b>개정</b> (2022.12.31.까지에 한함)				
2-29	상16	박스표 변경	변경				
			천연가스		기본세율	탄력세율	비고
			1. 발전용	일반	12원	8.4원	70%
				일반 LNG 발전 직수입 자가발전			
			열병합	열병합 발전 자가열병합 발전	12원	8.4원	70%
				연료전지			
			2. 1.외 발전용 <b>개정</b>		10.2원	85%	
			3. 수소제조용		8.4원	70%	
			4. 발전용 외		60원	42원	70%
			다만, 2. 1.외 발전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하10	⑤ 변경	⑤ 유연탄 : 2022.12.31.까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b>개정</b> ⑦ 순발열량이 kg당 5,500kcal 이상( <u>고열량탄</u> )인 경우는 kg당 41.6원 ① 순발열량이 kg당 5,000 kcal 이상 5,500 kcal 미만인 물품 : kg당 39.1원 ② 순발열량이 kg당 5,000kcal 미만( <u>저열량탄</u> )인 경우는 kg당 36.5원				
2-30	상8	(2) 적용기한 : 2022년 6월 30일 이전 <b>개정</b> 에~	(2)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 이전 <b>개정</b> 에~				
3-73	상8	이는 ~ 새로운 신탁자에게~	이는 ~ 새로운 위탁자에게~				
3-204	상9	(2) 주택 ~×60%	(2) 주택 ~×60%. 다만, 2022년도 1세대 1주택 : 시가표준액 ×45%*1 *1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				
4-46~56		(용어변경) 창업자 → 창업기업					
4-143	하11	과세이연금액 박스표 변경	추가 $\text{과세이연금액} = \text{매각대상기업 주식 등 양도 시 양도차익} \times \frac{\text{양도한 주식}}{\text{채투자로 취득한 주식}}$				